

보다 안전한 미래

(사)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우)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0(수서동, 로즈데일오피스텔 1828호) / Tel 02-567-1307/ Fax 02-567-1337

www.assi.or.kr E-Mail : assi1307@naver.com 담당 : 박용복국장 (H·P) 010-8688-5619

문서번호 시협 2019 - 159호

시행일자 2019. 7. 18.

수 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참 조 안전담당자

선 결			지 시	
접	일자		결	
수	시간		재	
	번호		공	
처 리 과			람	
담 당 자				

제 목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 규정 시정요청

1. 국가 균형 발전과 주거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귀 공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제 62조 제4항에 의해 실시하는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은 동법 시행령 제 100조 제 6항의 ‘안전점검 책임기술인’ 조항의 별표 1에 따른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9조에 따라 해당 기술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로 하여금 수행토록 되어있습니다.
3. 그러나 귀 공사는 ‘정기안전점검 과업지시서’(2016.12월 간행)1.4 용어의 정의 나.에서 책임기술자를 건축구조기술사로 특정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하므로써 법의 안전성을 훼손함은 물론, 추가비용을 부담시키는 부당특약조건으로 법정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이의 시정을 강력히 요청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